

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 안내



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정관 등을 변경할 때,
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해요!

신고 대상 정관 등을 변경한 인증 사회적기업

신고 방법 온라인(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-통합사업관리시스템)

* 인증·지정관리 ▶ 인증관리 ▶ 정관 변경, 지점 설립, 폐업 신고 ▶ 정관변경 신청



유의 사항

· 변경일의 기산점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유의하세요!

법인의 종류

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 및
비영리민간단체, 협동조합, 사업단 등

민법상 사단·재단법인,
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,
사회복지법인, 공인법인 등

변경일의 기산점

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
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

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
정관변경을 허가(인가)받은 날



문의처

- 사회적기업의 사후관리 상담 및 안내는 전국 대표번호 **1551-2024**
- 정관 등 변경신고 처리 및 보완서류 관련 문의는 **031-697-7722~5**

*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**공지사항 바로가기 ▶**



고용노동부

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